

공사계약일반조건등 개정 회계예규 주요 내용

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등의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보호에도 중점을 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맞춰 「공사계약일반조건 등」 17건의 회계예규 및 고시 「부대 입찰의 집행기준」을 개정,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개정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.

〈편집자註〉

1. 공사계약일반조건

가. 계약당사자간 성실한 회신의무 명문화(§ 5)

현 행	개 정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상대방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등에 정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조정청구등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회신토록 함

○ 사유

계약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 회신하도록 규정화 함.

나. 채권양도 승인절차 보완(§ 6)

현 행	개 정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함

○ 사유

채권양수인에게 미통지시 발생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(선의의 제3자 보호문제)을 방지

다. 공사계약이행보증방법 선택절차 명확화(§ 9) 명확화(§ 9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사계약시 연대 보증인을 입보 – 다만, 계약보증금의 2배는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토록 함 – 계약보증금 + 시공연대보증인 – 계약보증금 2배 – 공사이행보증서 (계약금액의 30%)

○ 사유

– 공사이행보증방법 선택을 명문화하여 연대보증인 입보강요사례 방지
– 시행령 제52조 개정내용 반영

라.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보완(§ 10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unker공사, 대안입찰 공사, PQ공사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무가입 대상공사외에도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

○ 사유

손해보험가입 의무대상공사 외에도 계약상대

자가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이행중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

마. 설계변경등의 시기 및 계약금액조정절차 명문화(§ 19~§ 21, § 23)

현 행	개 정
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계변경은 공정이행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도록 함(§ 19)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예산배정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,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§ 20) - 조정청구내용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간계산시 불산입 • 텁키 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(§ 21) •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(§ 23)

○ 사유

– 설계변경시기 및 계약금액조정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및 원활한 공사수행을 도모

– 시행규칙 제74조의2 및 제74조의 3의 규정(신설)내용 반영

바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절차 보완(§ 22)

현 행	개 정
•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지수조정을 적용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예산배정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,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– 조정청구내용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간계산시 불산입

○ 사유

–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화 함

–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내용 반영

사. 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확화(§ 25)

현 행	개 정
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-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불산입 - 다만,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정조치후의 검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간만 지체일수에 포함 • 준공기간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- 준공기한의 일부터 준공검사(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)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 *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도 지체일수에 산입되어 각각의 검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간만 지체일수에 포함

○ 사유

– 지체일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체일수 산정과 관련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함
– 기존 유권해석 내용 반영

아. 기성검사 절차 간소화(§ 27)

현 행	개 정
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감사에 같은

○ 사유

– 기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대가

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

- 시행령 제55조 개정내용 반영

자. 공시정지에 따른 지역보상금규정 마련(§ 47)

현 행	개 정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

○ 사유

-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보상
- (공공사업효율화 대책내용 반영)

차.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권 근거 마련(§ 47의2)

현 행	개 정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문서 등에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주기관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공기연장을 하여야 함

○ 사유

-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이행의무 불이행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이행정지권을 부여하여 계약당사자는 상호대등한 입장에 위치함을 분명히 함

- 공사업효율화 추진사항 반영

2.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

가. 계약당사자간 성실한 회신의무 명문화(§ 5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나. 채권양도등 승인절차 개선(§ 6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물품제조를 목적으로 채권(대금청구권)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 <삭제>

○ 사유

- 공사, 용역등과 같이 채권양도 규정마련
- 제작자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, 하청 승인에 관한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

다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절차 보완
(§ 11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라. 물품납품절차 개선(§ 13)

현 행	개 정
〈추 가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납품할 것을 의무화

○ 사유

- 국가등의 공공물자조달시에는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표준화 규격을 준수하도록하여 산업표준화 시책부응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도모

마. 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확화
(§ 24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3.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

가. 계약당사자간 성실한 회신의무 명문화(§ 6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나. 채권양도등 승인절차 개선(§ 7)

현 행	개 정
• 정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채권(대금청구권)을 제3자에게 양도불가	• 기술용역 이행을 목적으로 채권(대금청구권)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-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〈삭제〉
• 정부의 서면승인없이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	

○ 사유

- 공사와 같이 채권양도 절차규정 마련
- 하도급 승인에 관한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

다. 기술용역계약이행보증방법 선택절차 명확화(§ 10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라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절차 보완(§ 15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마.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절차 명문화(§ 16, § 17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바. 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확화(§ 24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사. 기술용역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근거 마련(§ 32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아.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권 근거 마련(§ 32의2)

-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

4. 공사입찰유의서

가. 입찰참가 대리인의 지정등 절차 보완(§ 8)

현 행	개 정
•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가능	• 입찰참가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시부터 입찰개시시각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변경 또한 동기간동안 가능하도록 함

○ 사유

- 대리인 지정 및 변경의 시기를 명확하게 함
- 시행규칙 제42조 개정내용 반영

나. 입찰서의 작성방법 보완(§ 9)

현 행	개 정
〈추 가〉	• 입찰서의 입찰서란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

○ 사유

입찰서상 입찰자란에 반드시 대표자성명을 기재토록 규정하여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

다. 입찰무효사유 명확화(§ 15)

현 행	개 정
• 대리권이 없는자가 한 입찰	• 대표자가 직접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(입찰개시시각전까지 대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대리인)이 아닌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자가 한 입찰
•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	• 입찰(대표자)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(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포함)
• 각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한 도급(수급)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입찰에 있어 도급(수급)한도액을 초과한 입찰	• 각 공사관련법령에서 도급(수급)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입찰에 있어 도급(수급)한도액을 초과한 입찰

○ 사유

대리인, 입찰자등과 관련된 입찰무효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입찰유무효 판단시 계약담당자

의 임의적 판단소지를 제거하고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함

라. 동일 가격 입찰시 낙찰자결정 방법 보완(§ 18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동가, 동점수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,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

○ 사유

적격심사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동가, 동점수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절차를 명확하게 함

5. 물품구매입찰유의서

가. 입찰참가 대리인의 지정등 절차 보완(§ 7)

—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

나. 입찰서의 작성방법 보완(§ 8)

—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

다. 입찰무효사유 명확화(§ 12)

—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

라.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결정방법 보완(§ 16)

—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

6. 기술용역입찰유의서

가. 입찰참가 대리인의 지정등 절차보완(§ 7)

—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

나. 입찰서의 작성방법 보완(§ 8)

—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

다. 입찰무효사유 명확화(§ 12)

—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

라.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결정방법 보완(§ 15)

—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

7. 적격심사기준

가. 대안입찰의 적격심사방법 개선(§ 4, § 7, § 8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후 낙찰자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 및 원안입찰자를 턴키공사와 같이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자를 실시 설계적격자(기본설계 대안입찰인 경우) 또는 낙찰자(실시설계 대안입찰인 경우)로 결정

○ 사유

- 대안입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격심사방법 개선
- 시행령 제85조, 제86조 개정사항 반영(공공사업 효율화 대책내용 반영)

나. 심사서류 제출관련 절차 보완(§ 4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또는 둑촉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류제출 기한 경과시에는 서류 제출을 허용하지 않음 •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요구토록 함

○ 사유

- 미비 또는 불명확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
-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에 대하여서 서류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의 수정제출을 불인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논리적 문제점 해소

다. 공사규모별 심사항목등 조정(별표)

○ 사유

-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됨에 있어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신규업체등 중소건설업체의 경우도 수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

– 소규모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그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함

현 행	개 정
• 추정가격 50억미만~10억이상 공사	• 추정가격 50억미만~10억이상 공사
□ 시공경험	□ 시공경험
•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실적누계액이 3배인 경우 만점으로 함	•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실적누계액이 3배인 경우 만점으로 함(30억미만 공사는 2배를 만점으로 함)
•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비율이 1.0미만인 경우 만점으로 함	•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비율이 3.0미만인 경우 만점으로 함
○ 추정가격 10억미만 공사	○ 추정가격 10억미만 공사
□ 시공경험	□ 시공경험
•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실적누계액이 6배인 경우 만점으로 함	•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실적누계액이 2배인 경우 만점으로 함(5억 미만인 경우 1배를 만점으로 함)
•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비율이 1.0미만인 경우 만점으로 함	※ 시공경험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 신고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% 이상이 되도록 함 ※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(부채비율인 경우에는 그 이하)인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% 이상이 되도록 함

8.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

○ 사전심사기준중 신인도 분야등의 평가방법 개선(별표)

현 행	개 정
○ 경영상태 <추가>	○ 경영상태 – 감자를 중요한 경영상태의 변경 요건으로 추가 ※ 사유 유상증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중요한 경영상태 변경요인으로 추가 – 합병,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합병등을 한 달부터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사유

합병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하여 이를 평가

9. 공동도급계약운용 요령

가.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범위 명확화(§ 7)

현 행	개 정
•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회수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지 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	•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선금 회수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시공등의 의무이행만 해당

○ 사유

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선금에 대한 책임여부를 분명히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

나.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기능 여부에 대한 규정보완(§ 12)

현 행	개 정
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없음 – 다만, 계약내용의 변경이나,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등으로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, 계약 이행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양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할 수 있도록 함

○ 사유

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추가가 가능함을 분명히 함(감사원 통보사항 반영)

다. 공동수급체구성원 제제 규정보완(§ 13)

현 행	개 정
•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로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함 – 계약담당 공무원은 실제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음 •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(단순한 자본참여만 하는 경우 포함)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하여야 함

공사계약일반조건등 개정 회계예규 주요 내용

○ 사유

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불이행시 제재조치 여부를 명확히 함(감사원 통보사항 반영)

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
바르게 정정하고

-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가점 노무비, 일반관리비, 이윤등에 균등 배분

- 일반관리비 등의 법정요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비록에 균등 배분함

10.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

가. 원가계산기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(제5장)

현 행	개 정
• 등록요건	• 등록요건을 원가계산용역 수행요건으로 용어변경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사, 지부의 경우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사, 지부에 대한 용역수행요건을 삭제하여 지사, 지부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원가계산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용역기관과의 협평성 반영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삭 제〉</p>

나. 기타

현 행	개 정
• 노무비(§9)	- 상여금: 기본급의 낸 400%
- 상여금: 낸 400%	※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상함을 분명히 함
• 일반관리비(§19)	- 소방공사, 기타공사의 경우도 전문, 전기공사 등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함
- 시설공사	- 금융결제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통보하는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
- 전문, 전기, 정보통신공사로 구분	※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적용환율 일원화
•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	
- 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여 일간신문에 고시하는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적용	

11. 내역입찰집행 요령

□ 산출내역서 조정방법 개선(§5)

현 행	개 정
• 내역입찰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산출 내역 서상 세부비목이나 부기가 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	•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를 간접노무비, 일반관리비, 이윤등에 균등 배분함에 있어

○ 사유

- 산출내역서 조정방법을 명확하게 함

12. 선금지급 요령

가. 사고이월공사의 선금지급방법 개선(§2)

현 행	개 정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선금에 해당하는 금액증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- 의무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

○ 사유

사고이월되는 경우 지급한 선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번잡성을 해소하는 한편,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에 따른 회수불가능 문제 및 약정연대보증인의 피해 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

나. 선금보증서 보증기간 연장(§3)

현 행	개 정
•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종료일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	• 60일 이상으로 조정

○ 사유

-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에 따른 공사지연을 선금보증기간경과시 선금채권확보가 곤란해지는 문제점 해소

- 계약보증금 보증기간과 일치시킴

다. 선금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(§4)

○ 사유

- 선금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외에

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
행사 선금잔액확보가 용이도록 함

현 행	개 정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상대자는 선금청구시 및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– 선금계좌를 대금수령계좌와 별도로 관리하고 선금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용내역을 제출 –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

13. 대형공시설계비 보상요령

○ 설계비 보상금 상향조정등(§ 3, § 4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예산의 1%를 설계비 보상예산으로 확보 • 설계보상비의 1/3을 낙찰될락자에게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.5%로 상향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설계보상비(공사예산의 15/1000)를 낙찰될락자의 설계점수 순으로 각각 7/15, 5/15, 3/15을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낙찰될락자가 2명인 경우에는 설계점수 순으로 각각 7/15, 5/15를 지급 – 낙찰될락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설계보상비의 1/3을 지급

○ 사유

턴키입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보상비를 상향조정하고, 보상비가 설계점수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효과적인 설계경쟁을 유도함

14.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

○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방법조정(§ 3)

–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, 적격심사 낙찰제를 세분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공사 금액별 적격심사내용에 맞추어 세부화 함

현 행	개 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다음의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9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–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인 중사 중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–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

15.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

○ 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등 보완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등 28개 공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28개 공사외에 발주 기관의 장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특별히 인정한 공사를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발주 기관의 장이 당해공사의 특성, 특수한 기술의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, 적용토록 함

16. 부대입찰의 집행기준

○ 하수급예정자 변경관련 사항 보완

현 행	개 정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수급예정자가 부도등의 사유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부대 입찰조건에 따라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다만,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 액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